

歐美의 公園 및 餘暇·레크레이션環境

—美國의 公園·레크레이션 制度에 관한 歷史的 考察을 中心으로—

文 石 基

청주대학교 이공대학 조경학과

Parks and Leisure · Recreation Environments in Western Areas ;
Special Considerations on the Public Parks & Recreation System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Moon, Seok-Ki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hongju Univ.

ABSTRACT

To understand the parks and leisure · recreation environments of United States, some major areas are studied with the brief history of R & P area. development Those are 1) National Park System and National Park Service 2) ORRRC and BOR 3) Education of the Recreation & Park professions

Som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In United States, R & P area has been developed on the firm base of 'Publicity'. Central Park as a public park, National Park Service and Bureau of Outdoor Recreation as Federal organization have led this concept.
2. Major recreational resources -natural, cultural and historical etc.-have converged into National Park System. On that, conservation and recreation use of those resources are possible in balance.
3. Establishment of the R & P area in the early stag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ducate professionals. And this situation has been so helpful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area.

I. 序 論

근자에 우리나라의 여가수요는 경제력의 성장과 비례하여 총량적으로 급증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형태와 이용하는 자원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화 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레저산업'이 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각광받게 되

면서 전국적으로 主題公園, 休養地, 콘도미니엄등의 개발이 활발하고 지방에 따라서는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公園, 餘暇, 레크레이션등의 다양한 용어를 통해 이 分野가 지칭되고 있는바와 같이 소위 '分野'의 성격과 구조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분야는 기본적으로

1990년 8월 14일 접수된 논문임.

이 논문은 198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논문임.

‘活動(옥외레크레이션)’과 ‘場所(자원)’가 접합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두 요소 각각과 상호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필요로 한다.

국민의 公共餘暇政策에 관한 한 지금까지는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발전의 과정을 보면 ‘資源의 效率의 保全’을 토대로 ‘資源의 合理的 利用’을 추진하여 국민의 여가수요를 충족시켜 왔으며, ‘여가산업’은 이같은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산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사회에서의 이 분야는 공식적으로 ‘공원 및 레크레이션 (Recreation and Park : R & P)’으로 통칭되고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본 稿는 II장에서 분야발전의 전반적인 흐름을 사회현상과 함께 概觀하고 III, IV, V장에서는 자원의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옥외레크레이션 자원 평가위원회(ORRRC)와 옥외레크레이션국(BOR)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이 분야 종사자의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 실태등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적절한 여가자원의 공급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여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무질서와 환경오염등 갖가지 사회적 폐해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 넘치는 수요가 자연 민간부문에 대폭 轉嫁됨으로써 이 분야의 기형적인 구조가 크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레크레이션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미국의 公園·레크레이션정책과 制度의 發展과정을 考察함으로써 현 우리나라의 당면한 문제들을 이에 對比하고, 國民餘暇環境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이 담당하여야 할 최소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업무의 영역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제안코자 하였다.

II.分野의 史的 背景

미국에서의 公園·레크레이션, 또는 餘暇分野의 성장은 유난히도 타분야의 발전과 변화에 영향받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분야의 발전이 과학의 발전, 公教育의 성장, 산업기술의 진전등과 사회·정치적성향의 변동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연대기적으로 볼 때 이 분야의 역사는 식민개척시대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발전 또는 성장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Sessoms, 1984), 본 稿에서는 이를 4단계로 요약하였으며 미국의 국가조직 체계와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① 행정, 법, 제도등의 발전 ② 주요 공원의 지정등 ③ 관련 집회나 단체의 구성과 회합 및 교육체제의 발전과정등의 분야로 나누어 연대표를 작성하였다. (표1)

〈표 1〉 미국 공원·레크레이션분야 주요 연대기

법규제정, 기관설치등	주요 공원설립등	주요회의, 학술지, 교육기관등
뉴욕 어린이놀이터법(1888) 공원보호법(1894)	최초의 국립 Military Park(1781) 뉴욕센트럴파크(1853) 최초의 주립공원(요세미티, 1864) 최초의 국립공원(벨로스톤, 1872) 보스턴 어린이놀이터(Sand Garden, 1886)	YMCA(1854) 미국산림연합회(1875)
산림청설립(1906)		Sierra Club 창설(1892) A, Physical Education Review(1896) J. of Forestry(1902) Playground(Recreation, 1907) 미국놀이터연합회, YMCA(1906) Landscape Architecture(1910) 미국 놀이터 및 레크레이션연합회(1911) 미국조경가연맹(1916) Parks and Recreation(1917)
유물법(1906)		
국립공원청(1916)	최초의 산림레크레이션계획(1920)	미국동물원, 수족관연합회(1924)
전국 주립공원의회의(1921) 국립수도공원위원회(1924) 백악관 옥외레크레이션회의(1924) 레크레이션법(1926)		전국레크레이션연합회(NRA, 1930) 국제레크레이션회의(1930)

법규제정, 기관설치등	주요 공원설립등	주요회의, 학술지, 교육기관등
Civilian Conservation Corps(1933) 국립공원계통 재구성(1933) 국가자원위원회(1935) 사적지 및 사적건물법(1935) 공원, 공원도로, 레크레이션지역조사법(1935) 레크레이션법 개정보완(1954) 미션66 프로그램(NPS, 1956) Operation Outdoors(USFS, 1957) 국립문화센터(공연예술법, 1958) ORRRC설치(1958) 오픈스페이스 및 도시개발법(1961) 여행청(USDC, Travel Service, 1961) ORRRC리포트(1962) BOR설치(1962) 레크레이션자문위원회(1962) 국립공원계통재구성(1964) 토지 및 수자원보존기금법(1964) 전국야생보존체계법(1964) 야생 및 경관하천법(1968) 환경교육법(1970) 국립트레일체계법(1970) 해안지역관리법(1971) 공원 및 레크레이션법(1978)	최초의 국립공원도로(1937) 최초의 국립레크레이션지역(1937) 디즈니랜드 개장(1955) 최초의 국립Riverway(1964) 최초의 국립문화공원(1966) 최초의 국립경관로(1968)	Rec. Land Use Course(U. of MASS, 1930) N. Park Mgmt Course(콜로라도주립대, 1934) Wildlife Mgmt. Curr.(U. of MASS, 1936) 전국 옥외레크레이션연구회의(1963) 전국 옥외레크레이션 전문교육회의(1964) 전국레크레이션 및 공원연합회(NRPA, 1965) 전국 공원 및 보존연합(1968) J. of Leisurre Research(1969) 세계 여가및 레크레이션연합(1973) Leisure Sciences(1979)

자료 : 1. Van Doren, CS, L. Hodges(1975) America's Park and Recreation Heritage, BOR, U. S. Department of Interior
 2. Sessoms, HD(1984) Leisure Services(6th ed), Prentice-Hall, INC.

1. 초기의 여건과 상황

1900년 이전의 시기는 사회,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시대를 거쳐 독립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시대로서 19세기에 들어서서 근대 公園·레크레이션분야의 기초적인 골격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레크레이션활동에 있어서는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놀이활동들이 유기적활동으로 발전하였으며 활동의 종류와 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에 설립된 YMCA는 이같은 활동의 조직적인 보급매체로서 크나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대의 대규모 도시공원의 효시가 되고 있는 뉴욕 센트럴파크(1853)은 넓은 잔디밭과 숲등의 자연을 도시내에 도입하고 다양한 레크레이션활동공간이 공원내 시설로써 배려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핫스프링스와 웰로스톤, 나이아가라폭포등이 보존목적의 자원으로 설정되고 도시에서는 보스턴의 어린이놀이터를 기점으로하여

공공레크레이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철도 노선망의 확대에 힘입어 승마, 건강체육시설등을 중심으로하는 리조트와 상업적 레크레이션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의 미국사회는 自由主義의 人本主義의 사고방식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같은 사고의 중심은 '적절한 놀이환경의 준비'와 '여가의 현명한 활용'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00~1914까지의 20세기 초반의 기간은 이같은 여가·레크레이션 지향적 사회가 시작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는데 미국놀이터협회(Palyground Association of America, 1906)의 설립은 커뮤니티레크레이션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캠핑운동의 확산과 레크레이션 에이전시의 등장으로 전문지도자의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公園'의 개념이 단순한 디자인의 개념에서 유기적 레크레이션프로그램 운영의 場으로의 개념으로 발전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과 공간으로만 존재하던 기존의 지역 및 도시의 공원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레크레이션체계를 조직하기 시작하고 있다.

한편 1906년에 제정된 遺物法(Antiquities Act)은 연방정부(대통령)가 과학적,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을 국가기념물(National Monuments)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보존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이들을 레크레이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2 제1차 세계대전—1940년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의 기간은 戰時의 여건에 영향받아 지방자치지역의 공원·레크레이션 서어비스가 성장한 시기이다. 즉 全美놀이터 및 레크레이션협회(PRAA : Playground and Recreation Association of America)의 주도하에 설립된 WCCS(War Camp Community Service, 1917)는 고향을 떠난 군역자들에게 유대감을 주고자 ‘近隣關係’를 형성시키기 위해 레크레이션을 이용하였으며 YMCA의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軍에 도입됨으로써 軍內에서의 레크레이션은 종교, 복지 및 대등한 수준의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같은 개념은 곧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근린사회중심의 유기적 레크레이션서어비스의 성장의 계기가 되었으며 1916년에는 국립공원과 국가기념물, 국립보호구역 등의 이용을 체계적으로 고양 및 규제하기 위하여 國立公園廳(National Park Service)이 설립된다.

전후 약 10년간은 경제적 호황에 힘입어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모든 형태의 레크레이션서어비스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업적 레크레이션이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게 되고 공원·레크레이션조직이 크게 확대되어 레크레이션 지도자의 양성이 활성화되었던 것이 특기할 만한 변화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1930년대의 대공황기는 공원·레크레이션분야에 관한 한 오히려 또 다른 성장의 시기로 기록될 수 있다. 즉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원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위한 각종의 시설(도로, 캠프장, 피크닉시설, 캐빈, 수영장, 보트장등)이 건설되고 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인력 고용이 대폭적으로 증대되는 등으로 인하여 분야의 발전이 크게 앞당겨진 것이다. 이같은 정부주도의 사업전개는 궁극적으로 행정부가 公共레크레이션을 주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립공원 개념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1933년 국립공원 계통이 구성되면서 다양한 자원(National Memorials, Cemeteries, Military Parks)들이 계통내에 포함됨은 물론 국립레크레이션지역(National Recreation Area)과 국립공원도로(National Parkway), 국립해안지역(National Seashore Area)등이 추가로 신

설된 것이다. 이는 그때까지의 국립공원의 보전적 개념에 레크레이션개념이 추가된 것으로서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키게 됨은 물론 공원·레크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게 된 것이다.

3 제2차 세계대전—1960년

제2차 세계대전기로부터 1950년대 중반에 이르는 동안은 광복한 만한 큰 변화나 성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이나 大戰기간중에는 각종 사회종교단체의 對軍 레크레이션 서어비스가 활발하였고 戰後에는 많은 도시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놀이터, 체육시설등의 건설이 촉진되었으며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이기도 하다.

50년대 중반이후는 몇 가지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 주제공원의 標本으로서의 가치가 큰 디즈니랜드가 1955년에 개장하였으며, 자연자원의 레크레이션목적의 이용이라는 전제하에 1956년에는 국립공원청의 사업으로 10개년계획의 ‘Mission 66’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관할 공원부지와 시설을 급증하는 방문객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계획, 복구, 개선, 현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山林廳(U. S. Forest Service)의 ‘Operation Outdoors’ 프로그램(1957)도 이와 동일한 목적에서 국유림내의 레크레이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1958년에 설치된 옥외레크레이션자원 평가위원회(ORRRC)는 미국의 공원·레크레이션 분야의 20세기 전후반을 가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20세기 후반(1976~2000년)의 여가수요에 대비하여 옥외레크레이션자원으로서의 공공용지를 비롯한 토지, 수면의 자원을 검토하도록 설치된 것으로 1962년에 완료된 총 27권의 방대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레크레이션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보존, 개발 및 현재와 미래세대의 접근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활동들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즈음 마련된 연방고속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망은 旅行(즉 레크레이션)과 관련 산업을 크게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60년대에 나타난 현상은 대공황이 없었던것만을 제외한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20~30년대와 비슷한 성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레크레이션 시설과 청소년프로그램의 엄청난 확산과 보우팅(Boating)과 캠핑산업의 伸張이다. 또한 ORRRC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옥외레크레이션국이 별도로 설치되면서 기존 국립공원청의 책무를 대폭 이양받음과 동시에 ‘토지 및 수자원 보존기금’을 관리함으로써 옥외레

크레이션용도 토지의 구획과 개발이 보다 확대되게 되었으며, 일련의 관련법안(경제기획법, 노인법, 주택 및 도시개발법, 수자원계획법, 야생 및 경관하천법, 국립트레일계통법등)의 制定으로 이 분야의 사회, 물리적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반면 60년대말에 가서는 레크레이션행위로부터 기인하는 공해와 환경 파괴 현상이 심각함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관련법안과 제도가 설치되기도 한다.

1966년 주요 레크레이션단체와 공원관련단체가 모여 새로이 『전국 레크레이션 및 공원연합회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 NRPA)』로 통합·창립되어 각기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공원'과 '레크레이션' 분야들이 명실공히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4. 1970년대 이후

1970년대의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60년대의 自由主義에서 80년대의 保守主義 사이의 전환기적 양상이 뚜렷하다. 공원·레크레이션분야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격동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국립공원체계가 도시공원에게까지 확대(1978년) 되기 시작하였으며, 인권과 관련하여 장애자를 위한 레크레이션 특별프로그램이 확대되고 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이 활발하였다. 또한 토지 및 수자원보존기금의 용도가 공원용지의 계획과 이용은 물론 공연예술프로그램, 유적지의 취득개선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옥외레크레이션국'은 역할의 그같은 확대변화에 맞추어 '유산보존 및 레크레이션청'으로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는데 (1978) 사회와 정책전반의 보수, 자율적(Deregulation) 분위기에 따라 결국은 基金의 대폭적인 축소와 함께 기구가 해체되게 된다(1981)

Ⅲ. 國立公園系統과 國立公園廳

1872년 웰로스톤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100여년이 흐르는 동안 미국의 국립공원분야는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여 오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기본적으로 그같은 긴 기간을 통해 美議會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인 주요 역사, 자연유산을 성공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이들 자원을 國立公園系統(National Park System)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체계화하고 國立公園廳(National Park Service)이라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관리와 이용의 효율화를 이룩하였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계통은 1981(1988)년 현재 21개 계열 334개소에 이르고 있으며(표 23) 그외에도 실제로 국립공

원계통에 포함되지는 않았더라도 국립공원청으로부터 행정, 기술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다수의 지역(National Historic Landmarks,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 Registered Natural Landmarks,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Landmarks)들이 국립공원청의 관장하에 있다.

1. 국립공원청의 설립과 국립공원계통

지금의 국립공원계통은 다양한 유형(21개 계열)의 자원들로 구성되고 있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웰로스톤국립공원을 시발점으로 하는 국립공원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유형의 계열들은 국립공원계통의 구성 및 국립공원청의 개설(1916년)과 1933년에 시행된 전연방공원 통합재구성, 그리고 그 이후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국립공원계통에 수렴 또는 결속되었다.

국립공원청은 1916년 8월 25일 '국립공원(National Parks), 기념물(Monuments), 그리고 보호구역(Reservations)으로 알려지거나 이후 경관과 자연, 역사적 대상물, 야생동식물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또 미래 세대의 위락을 위하여 그같은 수단과 척도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지역들의 이용을 고양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內務省산하의 기구로서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14개의 국립공원(National Park Line, 1872-1916)과 21개소의 국립기념물(National Monument Line, 1906-1916), 그리고 2개소의 보호구역(Mineral Spring Line, 1832-1916)등 모두 37개소의 자원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국립공원청이 발족되면서 곧 '국립공원계통'이 구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제반 시책과 업무프로그램(레인지서어비스, 정보 및 해석프로그램, 야생생물, 산림, 역사, 고고, 경관 등의 연구관리)은 바로 이때부터 구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국립공원계통은 1933년에 이르러 확대, 재편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청은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공원, 유적, 기념물 등에 책임있는 유일한 연방기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됨은 물론, 그때까지는 국립공원계통의 개념에 명료하게 포용되고 있지않던 적어도 4개 유형의 자원-국가기념물(워싱턴기념관, 자유의 여신상등), 국방공원 및 국립묘지, 국립수도공원, 그리고 최초의 레크레이션 지역(조지워싱턴기념 공원도로)-을 '系統'에 포함시켜 '국립공원계통'의 아이디어를 확대시키게 되었다.

또한 12개의 자연지역(Natural areas)과 57개소의 역사지역(Historical areas)도 여기에 추가되어 국립공원계통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화하게 되었다.

<표 2> 領域에 따른 國立公園系統地域

연도	자연지역	역사지역	레크레이션지역	문화지역	국립수도공원	기타	계
1916	26	8				1	35
1933a	46	20					66
1933b	58	77	1		1		137
1964	65	144	16		1		226
1972	74	172	36	1	1		284
1981c							334

a ; 재구성 이전 b ; 재구성 이후
 c ; <표 4>의 통계자료로써 분류방식에 차이가 있어 영역구분이 불가능
 자료 ; Ronald F.Lee(1974) Family tree of the national park system

2. 1933-1964의 성장

1933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루즈벨트대통령은 CCC (Civilian Conservation Corps)를 설립하고 광범위한 자연자원보전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에 국립공원청은 1936년에 총 600개의 CCC캠프(118 ; 국립공원, 482 ; 주립공원)를 할당받아 약 120,000명의 용원과 6000명의 전문직(조경, 공학, 산림, 생물, 역사, 건축, 고고등의 분야)을 고용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때의 CCC와 기타 비상프로그램은 국립공원청의 관리, 계획, 개발, 직제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뉴딜정책은 또한 사적지법(Historic Sites Act, 1935)과 공원, 공원도로 및 레크레이션조사법(Park, Parkway, and Recreation Study Act, 1936)을 통해 국립공원청에 범국가적인 자원조사의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여기서 전자는 국가적으로 의미있는 사적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후자는 전국적인 레크레이션수요를 조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기술과 계획의 측면에서 자문하도록 한 것인데 이때의 이같은 업무는 곧 훗날까지 청의 고유업무로 지속되게 된다.

<표 3> 미국 國立公園系統(1981)

분 류	개소	분 류	개소	분 류	개소
N. Parks	48	N. Monuments	79	N. Preserves	12
N. Lakeshores	4	N. Rivers	10	N. Seashores	10
N. Historic Sites	65	N. Memorials	22	N. Military Parks	12
N. Battlefield Parks	3	N. Battlefield	8	N. Battlefield Sites	1
N. Historical Parks	24	N. Recreation Areas	17	N. Parkways	4
N. Scenic Trails	1	N. Capital Parks	1	White House	1
N. Mall	1	N. Visitor Center	1	Parks(기타)	10

자료 ; William C.Everhart(1983) The national park service

한편 1953년에는 국립공원계통의 개념을 1.National Parks 2.National Monuments 3.National Historical Parks 4.National Memorials 5.National Parkways 6.National Capital Parks등의 영역으로 집단화될 수 있는 자원'으로 정리하고 있다.

총량적으로 볼때 1933년에서 1964년에 이르기까지 11개의 자연지역과 75개의 역사지역, 15개의 레크레이션 지역등 102개 지역이 국립공원계통에 추가되어 1964년에는 총 239개지역이 國立公園系統을 구성하게 된다.

3. 국립공원계통의 개념수정과 재정비

1964년에 이르러 국립공원계통의 자원들은 새로운 구조체계(자연지역, 역사지역, 레크레이션지역의 3가지 구분방식)로,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개념정립과 독립적인 행정정책을 개발하면서 재정의 되었다. 그같은 체계개편의 이유로는 '위의 세가지 영역의 지역을 국립공원계통내에서 한 개의 광역적인 관리개념으로 포용하는데는 그들의 보전을 위해서나 잠재력을 충분히 시

현하기 위해서는 부적당하고 무리가 있다. 각각의 영역은 서로 분리된 관리개념과 전체 시스템을 하나의 유기적 관리계획으로 엮기 위한 관리원칙을 필요로 한다.'고 밝히고 각 영역을 특성화하기 위한 자원의 관리, 자원이용, 물리적 개발계획의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국립공원계통의 성장은 그후 더욱 활발해지면서, 1972년에는 레크레이션 지역에 문화공간(Cultural Park ; Wolf Trap Farm Park for the Performing Arts)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게 된다. <표 4>

1964년 이후 1972년 사이에는 5개의 국립공원을 포함한

<표 4> 미국 國立公園系統의 分類(1972)

<u>자연지역(Natural Areas)</u>	<u>역사지역(Historical Areas)</u>
37 National Parks	153 Historical Sites and Buildings
37 National Monuments	19 National Memorials
2 Wildness Areas*	1,013 National Historic Landmarks*
167 Registered Natural Landmarks*	3,614 Historic Sites in National Register*
11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Landmarks*	
	<u>문화지역(Cultural Areas)</u>
	1 Park for the Performing Arts
	<u>국립수도공원(National Capital Parks)</u>
	720 Reservations*
<u>레크레이션지역(Recreational Areas)</u>	
5 National Parkways	
13 National Recreation Areas	
12 National Seashores and Lakeshores	
3 National Scenic Riverways	
1 National Scenic Trail	
2 Former Recreation Demonstration Areas	

* : 국립공원계통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임
 자료 : Ronald F. Lee(1974) Family tree of the national park system

3개의 자연지역과 29개 역사지역, 20개소의 레크레이션 지역이 지정되는 등 활발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1964년의 개념정리를 통한 체제의 정비와 그 때의 주변여건(New Conservation)에 영향받은 바가 매우 크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신보전'개념은 1962년에 작성된 옥외레크레이션자원평가위원회(ORRRC ; Outdoor Recreation Resource Review Commission) 리포트와 옥외레크레이션국(BOR ; Bureau of Outdoor Recreation)의 창설, 그리고 1964년의 '토지 및 수자원보전기금(Soil & Water Conservation Fund)'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1964년의 野生法(Wildness Act) 제정과 국가야생보전체계(National Wildness Preservation System)의 구성, 1965년 백악관에서의 自然美會議(Natural Beauty Conference)와 존슨부인이 주도한 자연미운동(Natural Beauty Movement ; 자연 및 문화자원의 미적가치에 대한), 1966년의 국가역사보전법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1971년 닉슨대통령에 의한 공원유산프로그램 (Legacy of Park Program)과 세계유산신탁(World Heritage Trust)의 제안등이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즈음의 환경보전추세에 대응하여 국립공원청에서는 1968년부터 NEED(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Development)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립공원 계통안에 環境教育地區를 설정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4. 국립공원청의 기능과 활동

'보수'와 '이용'은 과거나 현재를 불문하고 상호 상충되는 명제이나 국립공원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동시에 방문객의 이용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현실적으로 모순되는 목표를 근본적으로 안고 탄생된 것이다. 따라서 경관과 자연, 역사적 대상 그리고 야생동물을 보전하고 동시에 그들 자원을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청을 발족시키는데 즈음하여 그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어느 곳에도 명시되거나 설명될 수가 없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廳은 그 수단들을 자체의 노력으로 개발할 수 밖에 없었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목적을 위한 고유의 활동들을 창안해 내었다.

1) 解釋

마더(Mather, 1917)에 의해 선언되었던 바와 같이 국립공원과 국립기념물의 주 기능중의 하나는 교육적목적에 봉사하는 것이며, 여기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廳의 전문용어인 ‘해석(Interpretation)’이라는 용어로 대체된 것이다. ‘해석’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대체로 생소한 지질학, 생물학, 식물학 등의 전문용어를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는 뜻에서 도입된 용어이다. 廳관할의 모든 자원은 이같은 해석을 통해 방문객에게 소개되고 있고 박물관을 설치한 곳도 많다.

2) 調査研究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廳은 文化史나 自然史를 연구할 만한 연구직원이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1933년 최초의 역사공원이 지정되고나서 연구팀을 구성하고 웨익필드 유적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적인 조사연구를 최초로 수행하였다. 자연지역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1962년이 지나서야 비로서 활성화되었는데 국립공원이 ‘原始的 미국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충실한 연구에 기초하여 변형된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지금은 많은 자연지역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연구 전문직원이 배치되어 바람직한 자원관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3) 資源管理와 法規執行

廳의 용어로서 ‘자원관리’란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관리를 위한 적절한 나침대로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활동은 국립공원의 자연발생적 화재에 대한 廳의 대처방법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바, 사회적인 논란이 거듭되고 있지만 廳은 이같은 자연화재를 성숙림의 순환적과정으로 규정하고 그대로 방임하고 있으며 그같은 원칙이 모든 자원의 관리에 같이 적용되고 있다.

공원감시원(Ranger)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공원 안내자로서의 임무도 담당하지만 법규집행에 관하여 상당한 시간의 교육을 받아 공원지역내에서 경찰과 같은 법규집행의 임무를 수행한다.

4) 計劃

경관 또는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의 공원시설 개발행위는 항상 위험을 수반한다. 廳은 이 문제를 초기시설부터 廳內에 조경분야를 설치하고 모든 개발행위의 위치선정을 조경가의 판단에 의존(마스타플랜)함

으로서 해결하였다. 또한 일찌기 엄격한 경관조절정책을 수립하여 각 공원에서의 개발허용지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내고 있는데, 지금은 일반관리지침으로 통용되고 있는 마스타플랜의 작성에는 반드시 多分野接近方式(multi-disciplinary approach)에 의한 계획과, 공공의 참여에 의한 계획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IV. 옥외레크레이션자원평가위원회와 옥외레크레이션국

1. 배경

1940~50년대의 인구의 팽창과 여가시간의 증가, 경제력과 여행수단의 향상, 그리고 보다 나은 옥외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는 필연적으로 여가수요의 대폭적인 확대로 이어졌으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사회, 경제는 전시의 제한적 상황에서 벗어나 주택과 산업단지, 도로, 학교, 공항 등의 입지를 위한 토지수요가 급격히 증대함으로써 옥외레크레이션을 위한 자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같은 상충적인 상황은 의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미전역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결국 이의 해결을 위하여 ORRRC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옥외레크레이션자원평가위원회(ORRRC; 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와 옥외레크레이션국(BOR; Bureau of Outdoor Recreation)의 설치의 국민의 보건과 복지, 그리고 개개인의 위락을 위하여 국민의 옥외활동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가치를 부여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줄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국립공원계통등의 제도를 통하여 가치있는 자원들의 보건과 이용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이 기구들의 설립은 이 분야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관리와 계획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ORRRC는 1958년의 ORRRC法(Public Law 85~470)에 의하여 특별기구로 구성되어 맡은 바 기능을 완료하고 1962년 8월에 해체되었으며, BOR은 ORRRC 리포트의 제안에 따라 1962년 內務省(Dep't of Interior) 산하의 연방행정기구로 설치되었다.

2. ORRRC설치의 목적과 기능

ORRRC는 미국내 公共의, 또는 기타의 土地와 水面地域의 옥외레크레이션자원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의 목적과 의의는 ORRRC 설치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주 1) 야생생물의 군락이 쟁점화되었던 때로서, 많은 국립공원에서 생태계의 변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이 인식되었음.

미국인에게 개인의 위락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옥외레크레이션자원을 보전, 개발하고 ② 그 자원에서의 質的, 量的인 측면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하며 ③ 또 그것은 옥외레크레이션이 제공하는 정신적, 문화적, 신체적 혜택을 위한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로 ④ 국가의 옥외레크레이션자원을 조사평가하고 ⑤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 의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는 그것은 자원과 기회의 유형과 배치를 결정하며 ⑥ 대통령과 의회, 개개의 주와 시행기관이 이같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와 제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옥외레크레이션자원이란 '소유권의 여하에 상관없이 미국의 소유 또는 영토 안에서 옥외레크레이션에 제공되고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와 수면, 그리고 그에 부속된 자원'으로 '도시개발과 관련된 놀이터, 운동장, 골프코스, 도시공원, 동물원 등과 같은 레크레이션시설이나 프로그램, 기회들은 예외'도 규정하고 있다

3) ORRRC보고서

ORRRC는 약 4년에 걸친 활동의 결과로 총 27권에 달하는 주제별 연구보고서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종합보고서 -Outdoor Recreation for America-를 작성하였는 바,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옥외레크레이션과 관련된 제반 현황-자원, 활동, 행재정 및 제도등-을 망라하고 종합보고서에서는 조사연구들 통해 밝혀진 현황과 문제점을 집약하고 1976~2000년까지의 기간을 목표기간으로 하여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현황 또는 문제점으로 집약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① 가장 일반적인 옥외레크레이션활동은 수영, 피크닉 등 단순한 활동들이다.
- ② 옥외레크레이션의 기회는 도시지역근방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
- ③ 전국적으로 옥외레크레이션에 가용될 수 있는 토지는 상당히 많으나 효과적으로 수요에 대응치 못하고 있다.
- ④ 자원개발을 위한 財源이 필요하다.
- ⑤ 옥외레크레이션은 他用途의 자원이용과 경쟁하는 경우가 많다.
- ⑥ 옥외레크레이션에 있어서 물(水)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 ⑦ 옥외레크레이션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⑧ 옥외레크레이션은 여가활동 중에서 가장 주가 되는 것이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⑨ 옥외레크레이션의 價値가 보다 부각되어야 한다.

이같은 결론은 1960~60년대의 미국적 상황에서 도출된 것들이지만 여가·레크레이션의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현대의 국가라면 대부분 이같은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현황을 전제로 크게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것은 ① 옥외레크레이션 정책 ② 옥외레크레이션 자원 관리지침 ③ 기존프로그램의 보완 ④ 옥외레크레이션국의 설치 ⑤ 교부금제도의 운영 등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제안에 대한 근거와 의미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4. BOR의 설립

ORRRC에서 수행한 여러가지 일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내무성내에 옥외레크레이션을 전담하게 될 BOR의 설립을 제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ORRRC는 당시 또는 과거의 상황을 '레크레이션개발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자원중심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레크레이션機會의 配置와 特性, 質(quality) 등이 편중되는 결과'를 낳았음을 지적하고, '이제 국민의 욕구(Need)가 보다 고려되는 계획을 위하여 개발계획이 직, 간접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BOR의 기본 목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도하고 협력하며 조력하는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분산되고 중복되는 옥외레크레이션업무-정책, 계획, 프로그램, 관리등-의 조정을 위한 핵심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설사 전담기관의 신설은 불가하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레크레이션계획과 관련 연방기관간의 상호협력,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연구의 협조체계 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때 신설 BOR이 맡아야 할 주요 기능으로는 ① 관련 연방프로그램의 상호조정 ② 州 레크레이션 計劃의 활성화 및 지원 ③ 교부금 운영 ④ 조사연구의 수행 및 후원 ⑤ 州間 또는 地域間 협력 고양 ⑥ 주, 지역, 연방의 계획에 기초한 전국적 레크레이션 계획 작성 등의 6가지가 제시되었다.

5. 국립공원청과 옥외레크레이션국의 업무책임과 한계

내무성내에 새로운 레크레이션 전담기구(BOR)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국립공원청과 업무를 분담하게 되는 바,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NPS-BOR

Memorendom, 1965).

1) 국립공원계통계획

국립공원청은 국립레크레이션지역을 포함한 국립공원계통계획을 책임진다. 국립공원계통은 옥외레크레이션국의 책임인 범국가적인 레크레이션계획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두 기관 사이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廳은 廳에서 수행하는 연구제안(study proposal)을 局에 통보하고 局은 局에서 수행하는 연구제안중 廳과 廳의 계획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廳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국립레크레이션지역으로 제안되는 어떠한 지역에 관한 전문리포트도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2) 연방 수자원프로젝트

局은 특별수자원의회나 연방기관에 의한 종합하천유역계획의 레크레이션부문, 그리고 하천유역개념을 벗어난 프로젝트의 레크레이션계획에 관한 사전승인의 책임을 갖는다.

廳은 ① 모든 하천유역종합계획의 역사적, 고고학적, 자연과학적 관점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며 ② 일반개발계획이나 관련활동등에 대한 局의 事前認許 調査업무를 위해 기술적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廳은 또한 레크레이션지역의 개발과 해석 및 운영, 유수지관리계획등을 포함한 모든 사후인허가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연방활동과 접촉

BOR은 ① 전국 옥외레크레이션계획의 작성에 관련된 조사 또는 연구 ② 옥외레크레이션에 책임을 가진 연방 또는 비연방기관으 특별연구 ③ 국립레크레이션지역지정의 적합성판정과 연방관리기관의 추천 ④ 기타 비서실과 레크레이션자문회의에서 지정한 특별연구에 일차적인 책임을 갖는다.

NPS는 ① 역사, 고고, 그리고 특수한 자연과학적 주제를 포함하는 조사연구 ② 국립공원계통에 추가될 수 있는 잠재지역의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③ 다른 연방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지역 또는 지역체계의 개발, 운영, 해석, 계획등에 관한 조사연구 ④ 기타 비서실에서 할당된 연구등에 일차적인 책임을 갖는다.

현지조사등의 후속조치에 의하여 책임소재의 기관이 상호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한다. BOR에 의해 수행된 그같은 연구의 결과 NPS를 특정레크레이션지역을 관장하여야 할 기관으로 추천하게 된다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득하여, 그때부터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계획과 실행은 廳의 책임이 된다.

4) 기타

局은 전국레크레이션계획을 포함한 광역 레크레이션계획, 교부금의 배분등에 관하여·타연방기관, 주 및 지방정부등과의 협력, 지원, 조연등과 또한 옥외레크레이션에 포함된 일들에 관하여 연방기관과 비연방 이해당국과 사이의 기본적인 협력과 연락을 유지함에 책임을 갖는다.

廳은 특수지역의 계획, 운영, 解釋, 보호, 관리와 특수한 프로젝트, 공원, 레크레이션지역등과 제반문제등에 관하여 연방기관, 주 및 지방정부기관등과의 협력, 지원, 조연등의 책임을 진다.

V. 分野專門家の 養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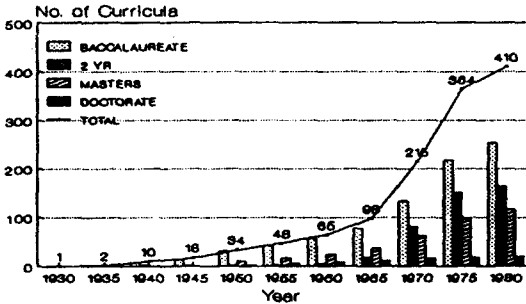
1. 교육기관의 개설

분야전문가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두 줄기의 학문적뿌리를 갖고 있는데 사회과학부문은 사회교육, 체육교육, 보건학등에서, 자연과학부문은 임학, 야생생물관리, 원예등의 자연응용분야에서 시작하여 조경, 공학, 도시계획등의 분야로까지 확산되었다. 지금의 공원·레크레이션분야의 전문가교육은 이같은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 교육기관의 교육목표에 따라 독자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사회, 자연과학관련 제부문이 필요에 따라 균형을 이루며 전문분야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관련기초분야(사회, 자연과학)를 통하여 공원·레크레이션부문의 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었으나 이 분야가 보다 전문화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에 들어서서이다. 즉 이 시기에 'Landscape Architecture(1910)'와 'Park and Recreation (1917)'과 같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잡지들이 창간되었고 도시공원설계나 山林의 레크레이션이용등을 고려한 '公園行政', '都市林'(뉴욕주립대, 1912)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대공황과 뉴-딜정정책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원계획과 개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어 '레크레이션토지이용'(메사추세츠대), '산림레크레이션관리'(유타주립대)등의, 과정이 30년대 초반에 시작되게 되었으며 '국립공원관리'(콜로라도 주립대, 1934), '레크레이션 및 도시림'(미시간주립대, 1935)등의 프로그램이 후속되고 1936년에는 '레크레이션교육'의 최초 학부 및 대학원이 개설되며(뉴욕대) 이어 '산림레크레이션'과정이 개설되는 등(노스캐롤리나대, 퍼듀대) 본

격적인 전문교육이 1930년대를 전환기로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대학의 교과과정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80년 현재 총 410개의 과정(2년, 4년제 및 碩博士 과정포함)이 운영되고 있다.(그림 1)



자료 : Stein, T. A., D. Henkel(1981) The SPRE Survey : Signposts to a New Trend, Parks & Recreation, Apr : 55-63

<그림 1> 미국의 공원·레크레이션분야 교과과정 개설추이

2. 분야의 구조

공원·레크레이션분야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구성되고 있음을 앞서 지적하였거니와, 대학교육과정의 주제를 통해서 분야의 학문적, 사회구조적 특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즉 NRPA의 관련 교과과정조사(1978, 1980)에서는 R & P 분야의 미국내 교과과정의 유형을 모두 1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표 5), 보편적으로는 R & P 일반전문가, 레크레이션더쉽/프로그램관리, 장애자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및 공원행정, 옥외레크레이션/캠핑, 공원자원관리등을 목표로 하는 교과과정이 많으나 여가상담, 대학유니온(학생회관)관리, 도시레크레이션, 문화예술등과 같은 특수한 목표의 과정도 이 분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같은 분야분류방법은 1984년도 SPRE(Society of Park and REcreation Educator, NRPA의 小分科)의 표본조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바 미국에서 이 분야의 세부분류는 대개 ① 일반전문가 ② 레크레이션리더/프로그램 ③ 장애자 레크레이션 ④ 옥외레크레이션 ⑤ 공원

<표 5> R & P 分野 細部專攻類型 (1981 NRPA)

Aging/Older citizens	Corrections
Cultural Arts	College Union Management
Forest Recreation	Generalist Program in P & R
Industrial Recreation	Leisure Counselling
Outdoor Recreation/Camping	Park Resource Mangement
Research	Recreation Leadership and/or Program Management
Recreation and Park Administration	School Recreation
Tourism/Commercial	Therapeutic Recreation
Urban Recreation	Voluntray/Youth Serving Agencies
Others	

자료 : NRPA(1981) (Donald D. Henkel) Directory of College/University Programs in Recreation, Leisure Services and Resources

<표 6> 教育過程別 主要專攻(1984 SPRE)

Options	Associate(n=57)	Bachelor(n=166)	Graduate(n=94)
Generalist	39%	51%	36%
Rec Leader/Programmer	54	31	20
Ther recreation	21	59	59
outdoor rec	21	39	31
R & P Administration	4	42	61
Park/Nat res Mng	4	20	7
Commercial	2	28	16
Travel/Tourism	2	12	12

자료 : Richard Gitelson(1985) Parks and Recreation Enrollment Stabilizes Parks and Recreation, Apr. : 64-69

/레크레이션 행정 ⑥ 공원/자연자원관리등의 분야구분이 보편적인 것이나 최근 관광분야의 가치가 부상되면서 ⑦ 상업적레크레이션과 ⑧ 여행/관광의 분야도 세부항목에 추가하고 있다(표 6). 한편 교육과정에 따라 각 細分野別 敎課過程開設의 특성을 달리하고 있는데 2년제 과정에서는 레크레이션리더/프로그래머과정이 가장 많은 대학에서 개설되고 있는 반면 4년제 과정에서는 장애자레크레이션과정을 필두로 비교적 균일한 분포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원과정에서는 공원/레크레이션행정과 장애자 레크레이션 전공의 과정이 다수를 차지해 각 교육과정별로 지향하는 바를 달리하여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VI. 結論

현재의 우리나라는 資源의 保全이나 餘暇需要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여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함은 누구나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여가환경여건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코자 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사회가 지금과 같은 국민여가환경을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으로서, 수차의 위기와 갈등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하여 왔는가 하는 것이다. 비록 정치와 경제, 문화, 그리고 자연동 제반여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겠으나 이를 감안하고 접근한다면 그들의 방법을 응용하고 변형함으로써 독자적인 우리의 것을 재창조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서 공원·레크레이션분야의 발전이 크게 이룩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1890~1900년대초의 資源保全을 위하여 시행한 연방정부의 정책과 입법이 공공레크레이션을 위한 土地保全의 필요성과 時機的으로 부합되고 동시에 도시공원시설의 확장적개발과 함께 레크레이션 운동이 활성화되는, 초기 관련여건들의 同時性으로 부터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여가환경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이다.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본稿에서 살펴본 미국에서의 여가분야의 발전과정을 통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 분야의 발전이 확고한 '公共性'이 바탕위

에 이룩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뉴욕 센트럴파크이 그냥 'Park'이 아니라 'Public Park'으로 불리웠다는데에서 일차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겠는데, 이는 공원이 지녀야할 물리적 특성 - Park: 즉 자연이 풍부한 지역 - 과 함께 일반대중(Public)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규정하고 있음이다. 또한 분야성립기에 있어서 국립공원계통과 국립공원청이 이 분야의 선도적역할을 수행해 왔고 이어서 옥외레크레이션국이라는 여가수요전담기구가 연방정부 내에 설립되어 적극인 여가정책을 펼친 것도 이같은 개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둘째 國立公園系統이라는 體制를 통해 자연, 문화, 역사등 중요한 자원의 관리와 이용이 國立公園廳에 집중됨으로써 자원의 '効率的인 保全'과 함께 '合理的인 利用'이라는 相反되는 목적을 균형을 이루며 해결하여 왔다는 점이다. 여기서 각 자원유형은 자원이 지닌 성격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가용여가자원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 것이다.

셋째는 공원·레크레이션의 전문분야가 일찌기 독립되어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분야전문인력을 양성해온 점이다. 이로써 공원 또는 레크레이션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은, 保全과 利用의 균형잡힌 발전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인 여가는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社會福祉의 對象이며 당연히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一次的인 수준의 여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공원·레크레이션분야 관련기관으로는 건설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 교통부와 관광공사의 관광지개발, 체육부의 사회체육, 그리고 도시의 도시공원등을 대표적인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관들은 각자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체로 '保全'과 '利用'중 한가지 측면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관광, 조경, 사회체육등 기존의 분야를 통해 각자 독립적으로 접근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들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공원 및 여가·레크레이션분야 전문인의 충실한 양성을 기대하기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行政과 教育의 차원에서 資源의 保全과 利用이 公園과 레크레이션의 관점에서 동시에 고려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제도와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公共의 國民餘暇環境을 제공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보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1. Everhart, W. C.(1983) *The national park service*, Westview Press, Boulder
2. Gitelson, Richard(1985) "Parks and recreation enrollement stabilizes," *Parks and Recreation*, Apr : 64-69
3. Henkel, D.(1981) Directory of college/university programs in recreation, leisure service and resources,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4. Henkel, D. D.(1977) Parks, recreation, and leisure services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 status and trends, *NRPA*. Arlington
5. Jafari, J, D. Aster(1988) "Tourism as the subject of doctoral disserta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15) : 407-429
6. Lee, R. F.(1974) *Family tree of the national park system*, Eastern National Park & Monument Association, Philadelphia
7. National Park Foundation(1988) *The complete guide to America's national parks* : 1988~1989 edition, Prentice Hall 1 Gulf + Western Plaza, N. Y.
8. Sessoms, H. D.(1984) *Leisure Services*(6th ed.), Prentice-Hall, INC.
9. Stein, T. A., D. Henkel(1979) "Recreation and park education in the U.S. and Canada-1978," *Parks and Recreation*, Jan. : 28-35
10. Stein, T. A., D. Henkel(1981) "Signposts to a new trend," *Parks and Recreation*, Apr. : 55-63
11. Van Doren, C. S., L. Hodges(1975) *America's park and recreation heritage*, BOR, U. S. Dept. of the Interior
12. An NPS-BO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rom Responsibilities set for National Park Service and Bureau of Outdoor Recreation(1965) *Parks and Recreation*, May : 322-323
13. ORRRC(1962) *Outdoor Recreation for America*